

회 보 서

우)21404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이편한세상시티부평역 2층
236호

TEL. 032-553-5115
FAX. 032-232-5240

문서번호 : 22509-3004

시행일자 : 2025-09-29

수 신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광구

참 조 : 경매10계

제 목 : 감 정 의 료 에 대 한 회 보

| | | | | | |
|-------------|----------|--|-------------|--|--|
| 선결 | | | 지 | | |
| 접 수 | 일자 시간 | | 시 | | |
| | 번호 | | 결 재 | | |
| 처 리 과 | | | · 공 람 | | |
| 담 당 자 | | | | | |

1. 저희 (주)우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9.18자 귀 제 『2023타경551571』호로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망 김순길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경호 소유물건(2023타경551571)』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주)우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이정기



수수료 청구서

(전화: 032-553-5115, FAX: 032-232-5240)

문서번호 : 22509-3004

수 신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광구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9.18 자 귀 제 『 2023타경551571 호로 의뢰하신 『 망 김순길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경호 소유물건(2023타경551571)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 평 가 수 수 료 | 290,000 | |
| 실 | 여 비 | 110,000 |
| | 토지조사비 | - |
| | 물건조사비 | 10,000 |
| | 공부발급비 | 2,000 |
| | 기타 실비 | 3,000 |
| 비 소 계 | 125,000 | 기본수수료 ≒290,000 |
| 특 별 용 역 비 | - | |
| 공 급 가 액 | 415,000 | 1,000원 미만 절사 |
| 부 가 세 | 41,500 | |
| 합 계 | 456,500 | |
| 기납부 착수금 | - | |
| 정 산 청 구 액 | 456,500 | |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서울축산농협 영등포지점 : 355-0082-9658-33(예금주:(주)우솔감정평가법인)

(주)우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이정기



감정평가서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광구

건명 : 망 김순길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경호
소유물건 (2023타경551571)

번호 : 22509-30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우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이편한세상시티부평역 2층 236호

TEL. (032)553-5115 FAX. (032)232-5240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서영

문서영



(주)우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이정기

(서명또는인)



| | | | | |
|----------------|--|------------|------------|------------|
| 감정평가액 | 일억사천칠백만원정 (₩147,000,000.-) | | | |
|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광구 | 감정평가 목적 | 경매 | |
| 제출처 | 인천지방법원 경매10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망 김순길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경호 (2023타경551571) | 감정평가 조건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등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기타 참고사항 | - | 2025.09.25 | 2025.09.25 | 2025.09.29 |

| 감정평가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개 | 구분건물 | 1개 | - | 147,000,000 |
| | 이 | 하 | 여 | 백 | | |
| 합계 | | | | | ₩147,000,000 | |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정기

이정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제지하층 제1호)로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뢰한 임의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30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18] | | | |
|--|------------------|------------|---------------|
| 건물명·동 | 통칭 “중앙아파트 ”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 사용승인 일자 | 1979.07.19. |
| 대지면적 (㎡) | - | 연면적 (㎡) | 2,234.69 |
| 주 용 도 | A.P.T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

3. 평가대상 구분건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기준]

| 기호 | 구분 |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 | 분양면적 (㎡) | 대지권 (㎡) | 용도 | |
|----|----|-----|-------------|-------------|-------------|------------|-----|--------|
| | 동 | 호수 | | | | | 공부 | 현황 |
| 1 | - | 지1층 | 274.21 | 0 | 274.21 | 40.50 | 지하실 | 근린생활시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9월 25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은 2025년 09월 25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및 용도 등은 귀 법원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건 기호는 귀 법원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및 도면, 전례 등에 의해 작성 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상이할 수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지하실(아파트)’ 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창고)’ 로 이용 중이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건물 배분 비율표에 따라 토지 및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감정평가는 임의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담보 목적 등 평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당 법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유의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괄로 감정평가 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3)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바, 본건과 유사한 평가사례, 매매사례 등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 | 층 /호수 | 전유면적 (㎡) | 실거래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거래시점 |
|----|---------------|----------------|----------------|-------------|--------------|------------------|-------------|
| | | | | | | | 사용승인일 |
| #1 | 부평동 64-** | 대림아파트 제상가동 | 제지하층 제지하 *호 | 39.105 | 25,000,000 | 639,300 | 2025.02.18. |
| | | | | | | | 1989.12.07. |
| #2 | 부평동 222-** | 상경오피스텔 | 제지하층 제B1**호 | 179.340 | 150,000,000 | 836,400 | 2022.11.04. |
| | | | | | | | 2003.04.26. |
| #3 | 청천동 390-* | 무지개아파트 제상가동 | 제지하층 제B**호 | 59.250 | 40,000,000 | 675,100 | 2025.07.14. |
| | | | | | | | 1993.03.26. |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 | 층 /호수 | 전유면적 (㎡) | 감정평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평가 목적 | 기준시점 |
|----|---------------|----------------|---------------------|-------------|--------------|------------------|----------|-------------|
| | | | | | | | | 사용승인일 |
| #4 | 부평동 417-* | 통칭 "건영빌딩" | 제지하층 제B**호 | 120.23 | 104,000,000 | 865,000 | 담보 | 2025.03.12. |
| | | | | | | | | 1996.12.27. |
| #5 | 부개동 477-* | 뉴서울아파트 제상가동 | 제지하층 제지하*호 | 475.6 | 505,000,000 | 1,061,810 | 경매 | 2023.11.22. |
| | | | | | | | | 1989.11.02. |
| #6 | 청천동 301-** | 동아타운 | 제지하층 제B**호 | 67.32 | 65,000,000 | 965,530 | 담보 | 2022.02.09. |
| | | | | | | | | 1997.06.11. |
| #7 | 부평동 417-30 | 통칭 "중앙아파트" | 제지하층 제1호 (본건) | 274.21 | 170,000,000 | 619,960 | 담보 | 2021.01.27. |
| | | | | | | | | 1979.07.1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 지리적 위치 | 이용상황 | 층수 | 가격수준(원/㎡) | 비고 |
|--------|--------|----|--------------------------|-----------------------------|
| 본건 인근 | 근린생활시설 | - | 전유면적(㎡) 당 1,000,000내외 | 층별, 위치별에 따라 가격차이 존재함. |

4. 인근 유사부동산의 낙찰통계 분석

(출처: <https://www.infocare.co.kr>)

| 구 분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비 고 |
|------|-----------|-----------|----------|
| | 낙찰율(%) | 낙찰건수(율) | |
| 근린상가 | 81.2% | 6건(23.1%) | 최근 1년 평균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 | 비교사례 선정 |
|-------|---------|
| 1 | #1 |

나. 선정된 비교사례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 | 층 /호수 | 전유면적 (㎡) | 실거래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
|----|-----------|------------|-------------|----------|------------|---------------|----------------------------|
| #1 | 부평동 64-** | 대림아파트 제상가동 | 제지하층 제지하 *호 | 39.105 | 25,000,000 | 639,300 | 2025.02.18. 1989.12.07.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 | |
|---------|--|
| 결 정 의 견 | 본 건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시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 합니다. |
| 사정 보정치 |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구분건물(집합상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중 본건과 물적 유사성이 있는 집합상가 지역별 자본수익률 통계를 활용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가. 시점수정치

거래사례#1 - 시점수정(2025.02.18 ~ 2025.09.25)

집합상가

지역 : 인천 부평(25.02.18~25.09.25)

2025년 01분기 : -0.91

2025년 02분기 : -0.85

2025년 03분기 : -0.85 (2025년 02분기 자료)

$(1-0.0091*42/90)*(1-0.0085)*(1-0.0085*87/91) \approx 0.9792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상업용)

| 구 분 | | | |
|------------|-------------------------|-------|--|
| 항 목 | 세 부 항 목 | 격차율 | 결정의견 |
| 외부요인 |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 0.90 | 비교사례 #1 대비 대중교통과의 편의성에서 우세하나 배후지의 크기에서 열세하여 대체로 열세합니다. |
| |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 | |
| | 대중교통과의 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 | |
| | 배후지의 크기 | | |
| | 상가의 성숙도 | | |
| 건물요인 | 차량이용의 편리성 (가로의 폭, 구조 등) | 1.00 | 비교사례 #1 대비 대체로 대등합니다. |
| |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 | |
| | 건물전체의 공실률 | | |
| |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 | |
| |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 | |
| |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 | |
| 개별요인 |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 0.95 | 비교사례 #1 대비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
| |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 | |
| | 층별 효용 | | |
| |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 | |
| | 주출입구와의 거리 | | |
| |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 | |
| 기타요인 | 향별 효용 | 1.00 | 비교사례 #1 대비 대체로 대등합니다. |
| |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 | |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 | 0.855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가액

$$\text{비준가액} =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 | 사례단가 (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치 | 산출단가 (원/㎡) | 적용단가 (원/㎡) |
|----|---------------|------|---------|---------------|---------------|---------------|
| 1 | 639,300 | 1.00 | 0.97927 | 0.855 | 535,270 | 535,000 |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기호 | 전유면적 (㎡) | 산출단가 (원/㎡) | 산정가액 (원) | 결정가액 (원) | 비고 |
|-----|-------------|---------------|-------------|-------------|----|
| 1 | 274.21 | 535,000 | 146,702,350 | 147,000,000 | - |
| 합 계 | 274.21 | | | 147,0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인근의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 구 분 | 세대수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구분건물 | 1개 | 147,000,000 | - |
| 감정평가액 | | 147,000,000 |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1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417-30 |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 | | | |
| | [도로명주소] | | | 1층 | 490.12 | | | |
| | 인천광역시 | | | 2층 | 490.12 | | | |
| | 부평구 | | | 3층 | 490.12 | | | |
| | 신탄리로 | | | 4층 | 490.12 | | | |
| | 6번길 18 | | | 지하실 | 274.21 | | | |
| | | | 옥탑 | 57.12 | | | | |
| |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417-30 | 대 | 일반상업지역 | 1,024.5 | | | |
| | | | | (내)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조 제지하층 제1호 | 274.21 | 274.21 | 147,000,000 | 비준가격 |
| | 1. 소유권대지권 | | | 40.50 | 40.50 | | | |
| | | | | ----- | ----- | | | |
| | | | | 1,024.5 | 1,024.5 | | | |
| | | | | | |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배분내역 102,900,000 44,100,000 | |
| | 합 계 | | | | | | ₩147,000,000.-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79.07.19.)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인천상사주식회사)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지하실(아파트)' 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창고)' 로 이용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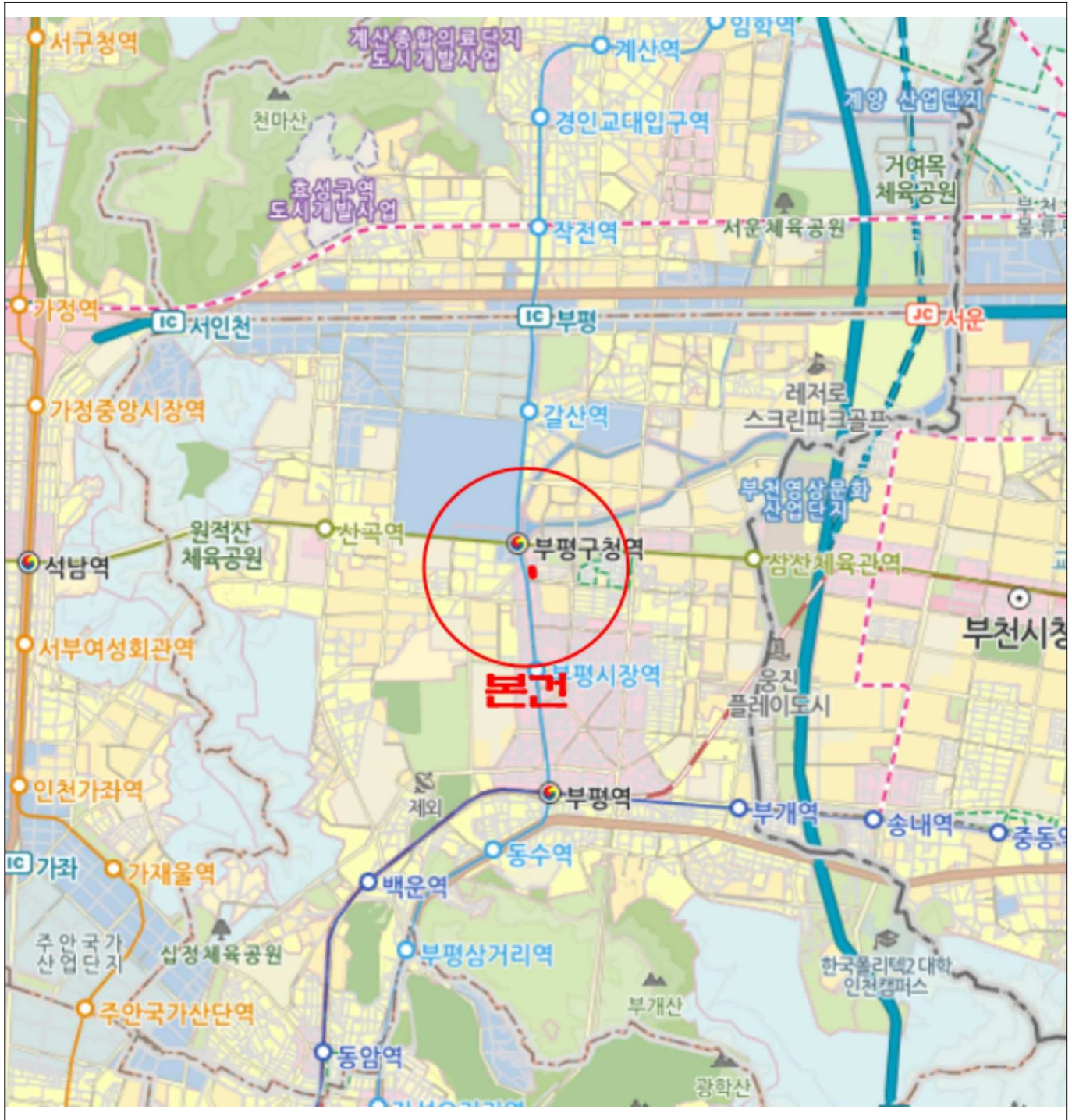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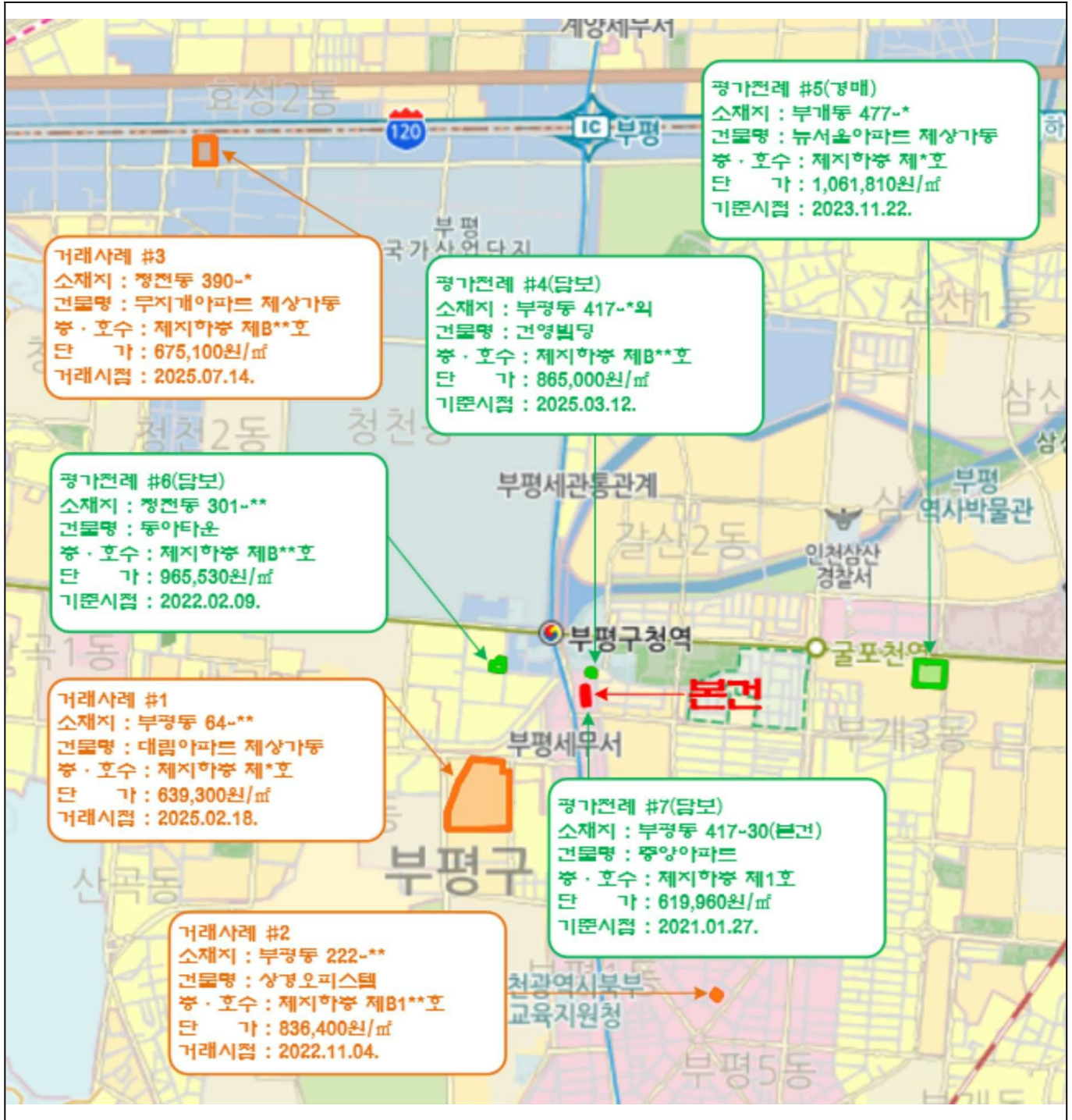
| |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30 중앙아파트 제지하층 제1호 |
|-----|-------------------------------------|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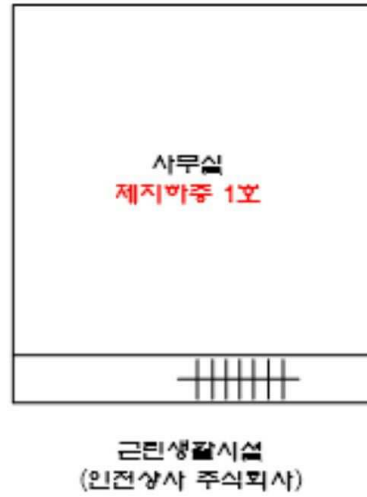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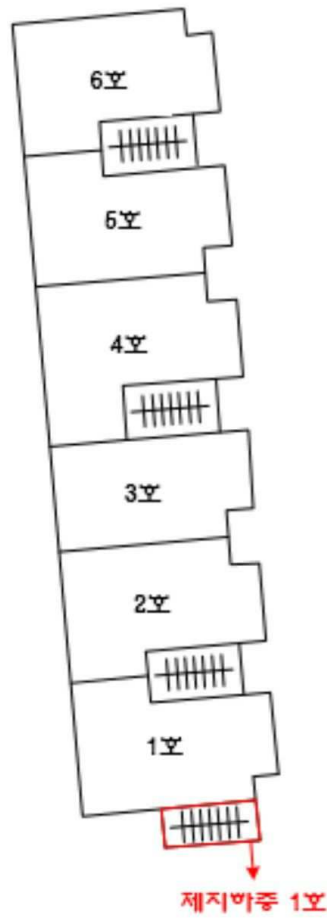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30 중앙아파트 제지하층 제1호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호별배지도

내부구조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30 중앙아파트 제지마중 제1호 >

| 임대부분 | 임차인 | 보증금(원) | 임대료(원) | 비고 |
|------|-----|--------|--------|----|
| | | - 임 | 대 | 미 |
| | | | 상 | |
| | | | - | |



[]



[]



[]